

1. 개정이유

어구·어법 중심(input control)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(output control)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,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·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에 일반야영장도 추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규제를 완화하고,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정 반영하여 관련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집행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포획·채취금지 기준 완화(제6조제5항 및 제6항)

- 어업인 단체가 총허용어획량(TAC) 최고한도를 준수하고, 어선위치 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, 조업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포획·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·체중을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 마련
- 세부 내용 및 절차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도록 규정

나.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(별표 14)

- 관련 법령명이 기존 「수산업법」으로 되어 있던 것을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정에 따라 분리하여 규정

다. 조성금의 감액기준(별표 15)

- 기존 어업자로 통칭되었던 것을 어업자 및 양식업자로 분리하여 규정

라.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(별표 16)

- “어업용”을 “어업용·양식용”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, 수산자원보호 구역 내 허용행위에 ‘일반야영장’도 추가하여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5. . ~ 6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4항 및 제5항”으로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·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1.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
2. 「어선법」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
3.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
4.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

[별표 14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”를 “자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따른 양

식업 면허를 받은 자, 「수산업법」 제14조”로, “받은 자”를 “받은 자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”로 한다.

“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”을 “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중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”으로 한다.

“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”을 “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”으로 한다.

[별표 15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어업자”를 “어업자 및 양식업자”로 한다.

“어업에”를 “어업 및 양식업에”로 한다.

[별표 16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가목 중 “농업·임업·어업용”을 “농업·임업·어업·양식업용”으로 한다.

제2호서목 중 “자동차야영장업을 위한”을 “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 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포획·채취금지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포획·채취금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·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</u> <u>1.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</u> <u>2. 「어선법」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</u> <u>3.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</u> <u>4.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</u>

⑤ 제4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금지 기간 및 체장·체중의 내용과 그 적용기간,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·방법 및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.	⑥ 제4항 및 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[별표14]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 기준 ○ 「수산업법」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축제식해	----- -----자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, 「수산업법」 제14조----- 받은 자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--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수조식 해 수 양 식 업----- ----- ----- --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축제

수양식어업 또는 「수산종자산업 육성법」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	식 해 수 양 식 업 ----- ----- ----- -----
[별표15] 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기간 중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또는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재해피해의 정도가 30% 이상으로서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<u>어업자</u> 해당 <u>어업</u>에 대하여 2회 이상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어업자 및 양식업자</u> ---<u>어업</u> <u>양식업</u>에 ----- -----.
[별표 16]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.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가. <u>농업·임업·어업</u>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, 그 밖의	[별표 16]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. ----- ----- ----- 가. <u>농업·임업·어업·양식</u> <u>업</u>용-----

시설 나.·다. (생략) 2.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 하는 행위 가. ~ 버. (생략) 서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 른 <u>자동차야영장업을 위한</u> <u>자동차야영장</u>(「하수도 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 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)	---- 나.·다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가. ~ 버. (현행과 같음) 서. ----- ----- - <u>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 영장</u> 및 ----- ----- -----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531 (044) 200 - 5540